

GRAPH DESIGN CONTENTS



GRAPH DESIGN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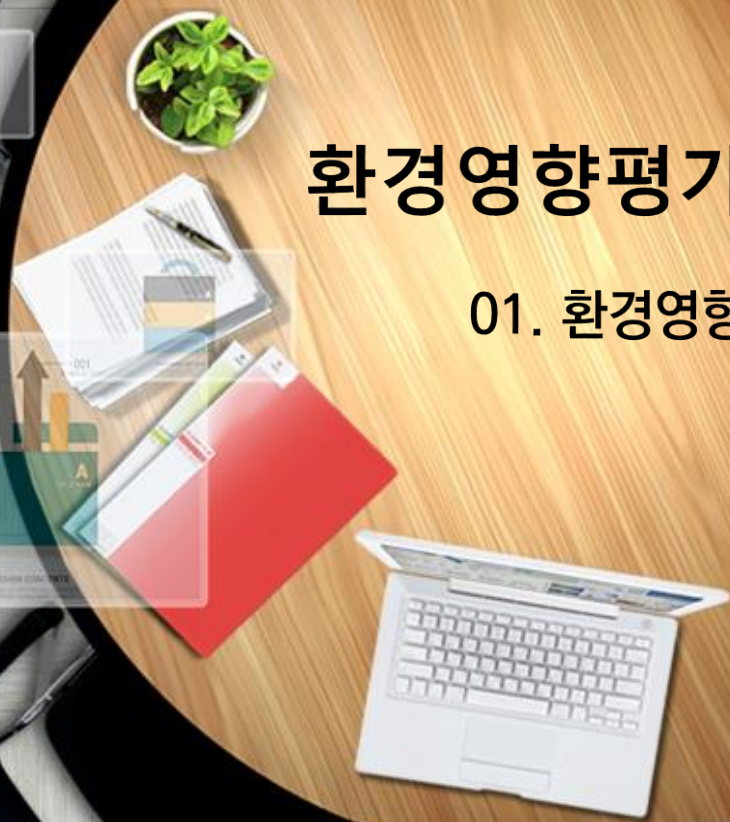
GRAPH DESIGN CONTENTS



GRAPH DESIGN CONTENTS

# 환경영향평가스코핑

## 01.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법적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0892호)

- 2000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2008년- 개별 법령으로 환원
- 2011년- 7월 전부 개정

## ▶ 목적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에 명시

이 법은 환경에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평가 종류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종류

####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 평가 종류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종류

#### 환경영향 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8개 분야, 15개의 정책계획,  
17개 분야, 86개의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17개 분야, 78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9개 분야, 20개의 사업

## ▶ 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 평가 대상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함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평가 원칙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서술

➔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 평가 원칙

-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 ▶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의 분야에 속하는 세부항목을 선정



세부항목은 다음 슬라이드 참조  
이 중 스코핑 단계에서 평가할 항목을 결정하게 됨

##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환경보전과의 부합성

- 가) 국가 환경정책
- 나)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계획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다) 환경용량의 적정성

##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기본계획

#### 입지의 타당성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1)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4) 수환경의 보전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1) 환경기준 부합성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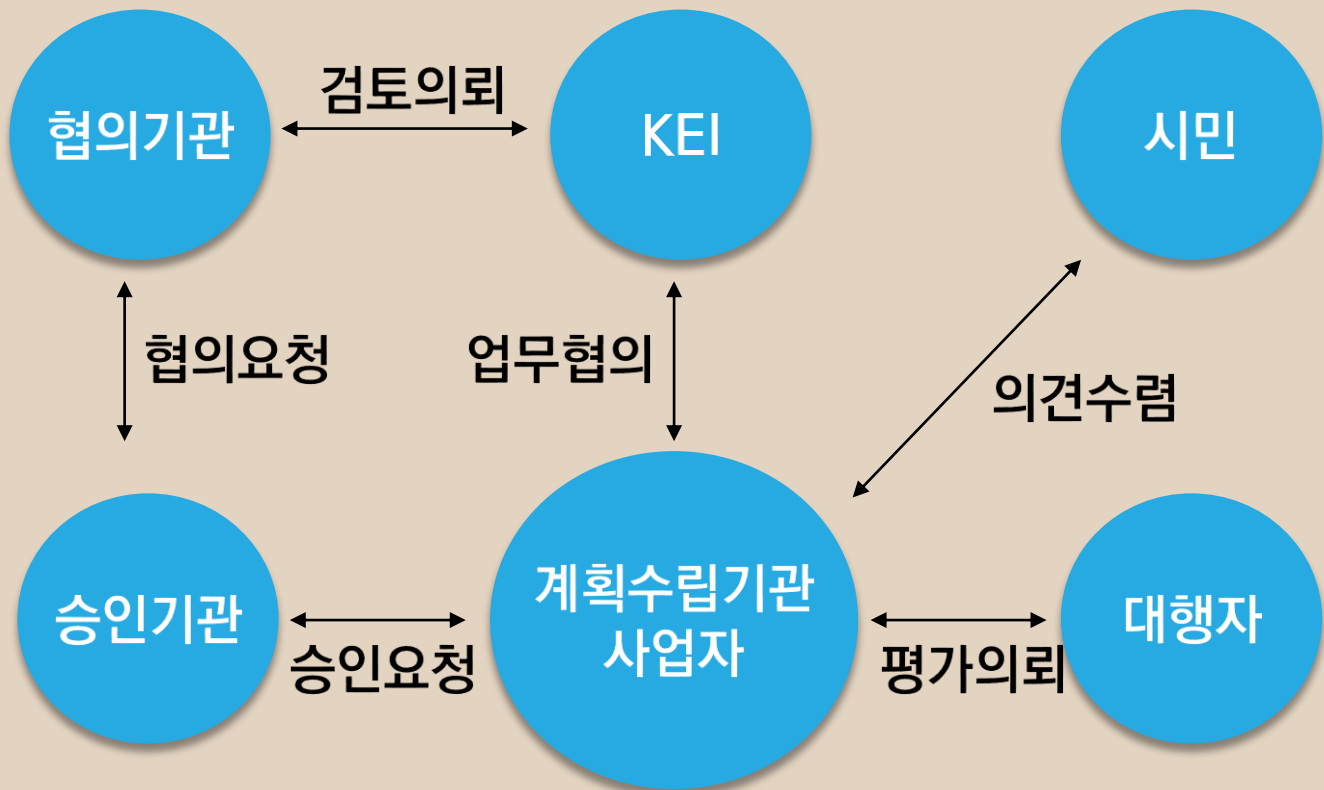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	인구, 주거(이주 포함), 산업

▶ 평가의 참여자  
환경영향평가등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조직





## ▶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스크리닝(Screening)

스크리닝은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행위를 말함

스코핑

평가

저감대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평가의 행정적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스코핑을 하는 것

## ▶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절차



## ▶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절차

